

하남시 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3099
----------	------

발의연월일 : 2025년 5월 일

발의자 : 박선미 의원

1. 제안이유

- 가.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발생하는 소아 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현재 하남시는 심야어린이병원 3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 나. 하남시 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아환자에 대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나. 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과 지원사업(안 제3조~안 제4조)
- 다. 관리 및 지정 취소 등(안 제5조~안 제6조)
- 라. 지원절차 등(안 제7조)

3. 제정안: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하남시 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하남시에 개설 등록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정) ① 시장은 심야시간과 공휴일 소아 경증환자 진료를 위하여 하남시 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심야어린이병원의 자격과 기준, 지정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심야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2. 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3. 그 밖에 심야어린이병원이 소아환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 사업

제5조(관리) ① 시장은 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심야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심야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심야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심야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야어린이병원 지정 후 이용실태가 저조하거나 지정 및 지원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3. 심야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4.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해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등)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1 「보건의료기본법」

[시행 2025. 4. 17.] [법률 제20922호, 2025. 4. 17.,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의료법」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93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
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
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제33조의2에 따른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1.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
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
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⑥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여야 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4.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증축·개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⑨ 의료법인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등”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의료법인등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⑩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